



일본국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26조)와 생존권(25조)의 관계성 재검토

츠카바야시, 미야코
윤, 태우

(Issue Date)

2025-01-31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Author's Original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2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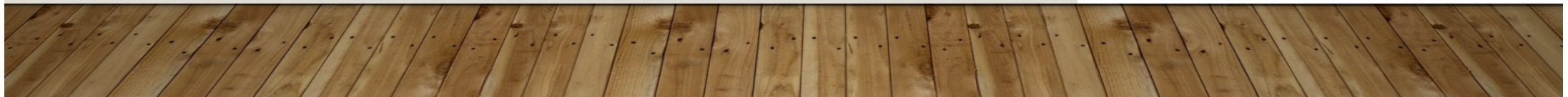


‘교육의 기회 균등’을 다시 말하다(제2)

일본국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26조)와 생존권(25조)의 관계성 재검토

테이쿄과학대학 강사
츠카바야시 미야코(塚林 美弥子)

2025년 1월 12일



【발표 개요】

1. 지금까지의 연구
2. 문제의 소재
3. 헌법 25조와 헌법 26조의 통일적 보장
4. 교육의 '기회 균등'과 25조 및 26조의
통일적 보장
5. 끝으로

1. 지금까지의 연구

(1) 프랑스의 연대(solidarité)론

(2) '교육을 받을 권리'(26조)의 해석론

학위 논문(박사)

프랑스에서의 '연대(solidarité)' 개념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 '사회보장적 보호에 대한 권리(droit à la protection sociale)'론 서론-

2. 문제의 소재

(1) 기존의 조문 해석

① 헌법 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생존권설
- 학습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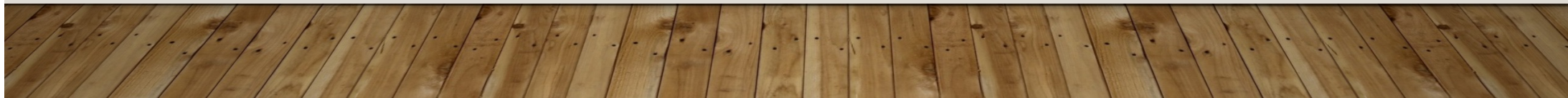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2. 문제의 소재

(1) 기존의 조문 해석

② 교육기본법 4조

1항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아야 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가문을 이유로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해 장학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1) 기존의 조문 해석

② 교육기본법 4조

- 1항: 헌법 14조에서 법 앞의 평등으로 언급되지 않는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3항: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장학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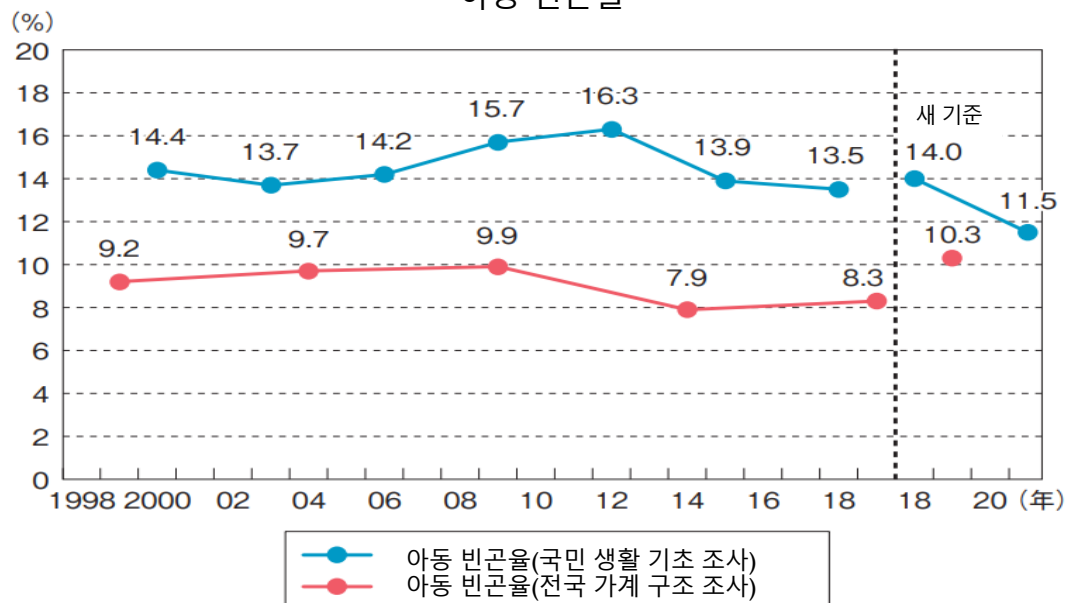
2. 문제의 소재

(2) 현실에서의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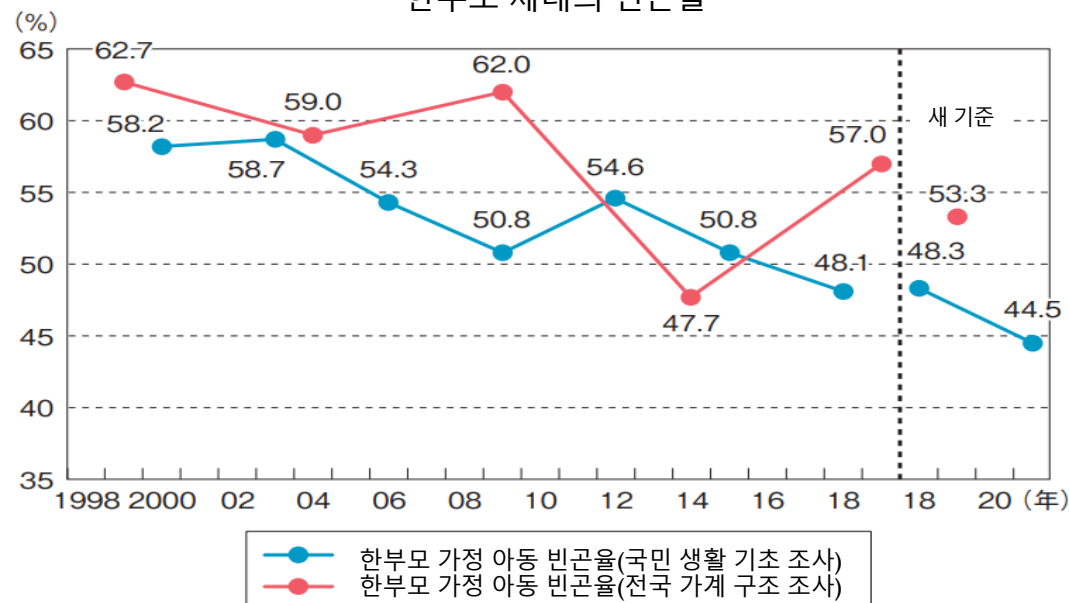
① 아동의 빈곤

* 출처: 2024년도판 아동 백서(子ども白書)

아동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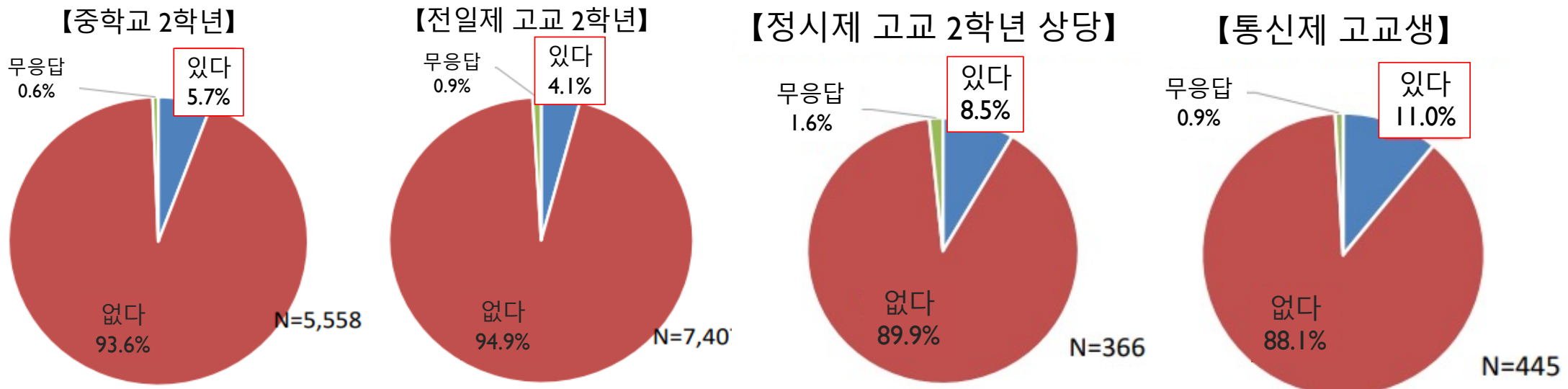
한부모 세대의 빈곤율



2. 문제의 소재

(2) 현실에서의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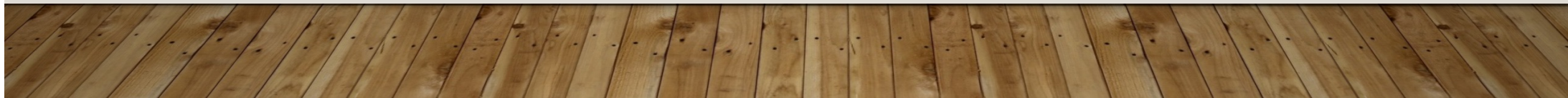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②가족 돌봄 청(소)년 * 2020년 후생노동성 조사
○돌봄을 하는 가족이 “있다”고 답한 아동의 비율○



3. 헌법25조와 헌법26조의 통일적 보장

(1) 25조의 규범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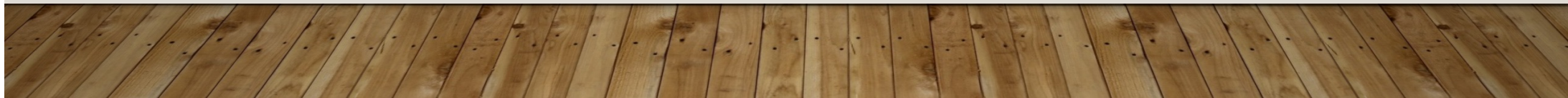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 헌법학계의 생존권 이해: 자신의 삶을 자율적 · 주체적으로 구상하고, 또한 달성하려고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엔도 미나(遠藤美奈)설: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것도 헌법상 최저수준의 생활 보장에 포함



3. 헌법25조와 헌법26조의 통일적 보장

(1) 25조의 규범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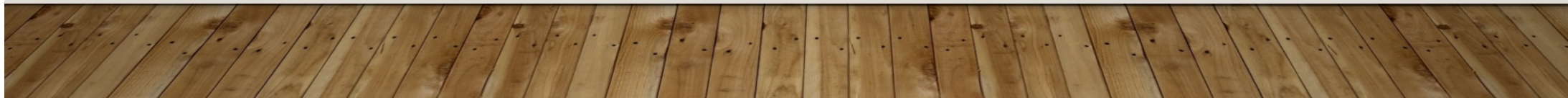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 엔도미나 설: 좋은 삶에 있어서는 타자와 관계성 유지, 형성이 필수적
-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은 자유롭게 자율적인 삶의 구상과 그 전제인 타자와 관계성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 헌법25조와 헌법26조의 통일적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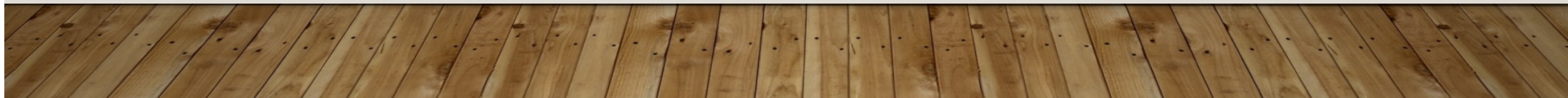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2) 규범적 가능성

- 아동의 권리=일정 정도의 물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요구할 권리
⇒ 25조의 규범성은 특히 아동에게 적용된다
- 물적 환경으로서 교육의 장에서의 '좋은 삶'
⇒ 생존권을 학습권 해석상 중추적 개념으로 재정립



4. 교육의 '기회 균등'과 25조 및 26조의 통일적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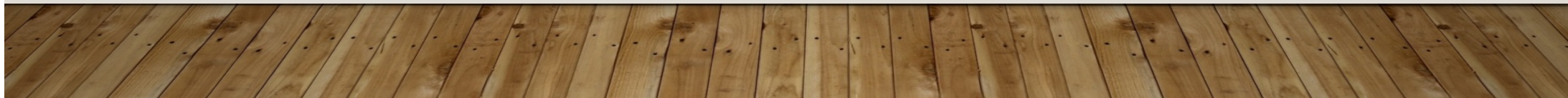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 교육의 본질: 하나 하나의 인간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거나 그 관계를 변혁해 나가는 '힘'을 몸에 익혀 가며—자기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 여러 경험이나 놀이, 주변 어른이나 친구와 관계성을 구축하는 계기도 교육기회 균등에 포함된다



4. 교육의 '기회 균등'과 25조 및 26조의 통일적 보장

• 헌법 및 교육법상 교육의 기회 균등의 의의
⇒ 좋은 삶의 추구를 보장하는 기회 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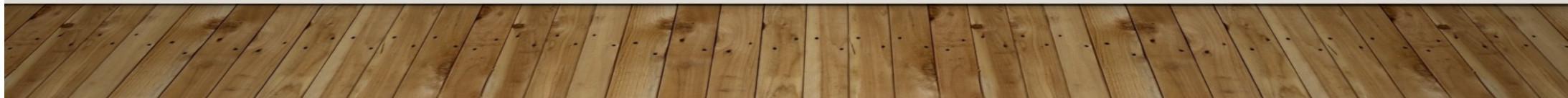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ex) 동급생과 공통의 경험을 한다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자기의 세계를 확장한다



4. 교육의 '기회 균등'과 25조 및 26조의 통일적 보장

- 아동의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법
(2024년 6월 26일 제정)

제1조 본 법률은 빈곤으로 인하여.....아동이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국헌법 제25조 및 그 외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및 아동기본법(2022년 법률 제77호)의 정신에 바탕하여,



5. 끝으로

- 연대 개념: 자기 실현을 위한 발판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
- ⇒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다시금 통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어, 사회적 권리 의무 관계를 재구축한다

5. 끝으로

- 아동의 자기 실현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
⇒ 부모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재고할 필요
- 앞으로 과제: 연대론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와
사회의 의무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를 이뤄낸다

참고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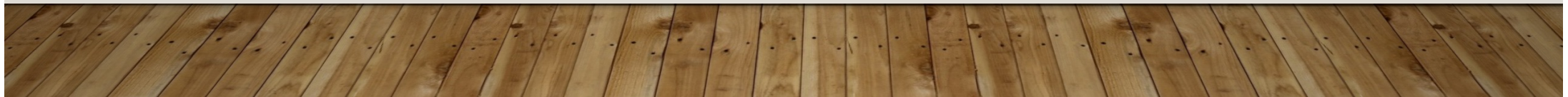
【일본국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14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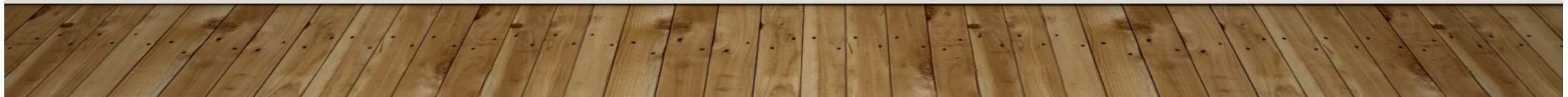
제2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조문

【아동의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본 법률은 빈곤으로 인하여 아동이 적절한 양육 및 교육,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 아동이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 그 외 아동이 그 권리 이익을 침해받고 또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국헌법 제25조 및 그 외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및 아동기본법의 정신에 바탕하여, 아동의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또한 아동의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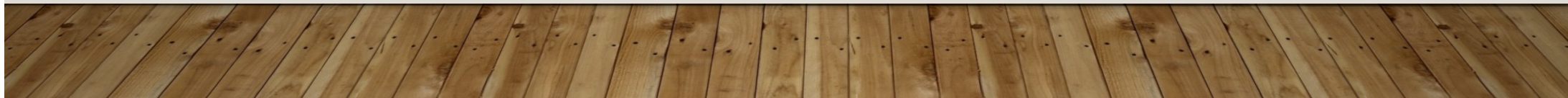
참고 조문

【교육기본법】

제4조 1항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아야 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가문을 이유로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가 있는 자가 그 장애의 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3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해 장학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